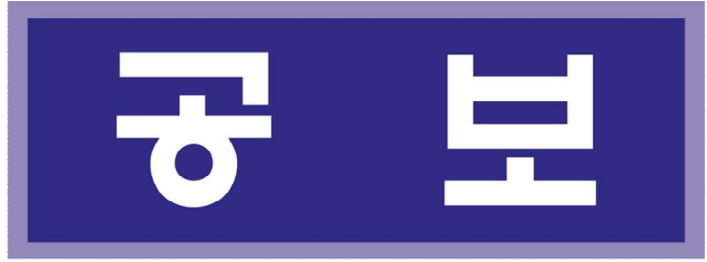


활기찬 경남 **행복한 도민**



경상남도

www.gyeongnam.go.kr



제2669호 2024. 3. 29.(금)

알 림

경상남도 조례 제5632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..... 2

2024. 3. 28.자로 공포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공포문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.

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인

2024년 3월 29일

● 경상남도 조례 제5632호

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“학교”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중학교, 고등공민학교, 고등학교, 고등기술학교, 특수학교(중·고등학교 과정), 각종학교와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이 지정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.
- 2. “교복”이란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.
- 3. “교복구입비”란 학생의 교복 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.
- 4. “일상복”이란 학교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 대상) ①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.

- 1. 도내 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1학년 학생
- 2. 다른 시·도 또는 국외에서 도내 학교로 전입학하거나 편입학하는 1학년 학생
- 3. 그 밖에 교육감이 교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.

- 1.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
- 2.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

제4조(지원 금액)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복 착용을 학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학교의 학생에게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,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.

제5조(환수)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.

- 1.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
-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

제6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3조에도 불구하고 2024학년도 1학년에게 교복구입비 또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급한다.

◇ 제정 이유 ◇

교복을 착용하는 경상남도 도내 중·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복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교육복지 실현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

◇ 주요 내용 ◇

- 안 제2조(정의)
 - “학교”, “교복”, “교복구입비”, “일상복”의 뜻을 정함
- 안 제3조(지원 대상)
 - 도내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학생
 - 다른 시·도 또는 국외에서 도내 학교로 전입학하거나 편입학하는 1학년 학생
 - 그 밖에 교육감이 교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
- 안 제4조(지원 금액)
 -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에 지원
 - 교복 착용을 학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학교의 학생에게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 지원